

통로 이동중 안전난간의 중간대 사이로 빠져 추락

재 해 개 요

- 컨베이어 통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바닥면에 돌출된 요철부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과 안전난간의 중간대 사이로 몸이 빠져 3.7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여 외상성혈액량감소쇼크로 사망

기인물 및 가해물



기인물

가해물

- | |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☐ 컨베이어 (5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 류 : 벨트식 ○ 규 격 : 700mm(폭) × 27,000mm(길이) ○ 구동모터 : 20HP ☐ 안전난간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부난간대 높이 : 1,120mm ○ 중간난간대 높이 : 560mm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☐ 통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 료 : 익스팬디드메탈 ○ 경사도 : 17.2° ○ 규 격 : 650mm(폭) × 27,000mm(길이) ○ 발끝막이판 높이 : 50mm ○ 난간기둥 간격 : 1,030mm ○ 난간대 지름 : 35mm(상부), 16mm(중간) |
|---|---|

재해발생원인

- 컨베이어 통로의 바닥면 상태 불량
 - 컨베이어 통로의 바닥면에서 상부로 약 9cm 높이로 돌출된 요철부위가 발생한 상태임
-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구조 부적합
 -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음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안전한 통로 설치
 - 컨베이어 통로 상의 바닥면에 돌출된 요철부위를 보수하여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
- 안전난간대 구조 및 설치요건 준수
 - 난간대는 지름 2.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,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 및 중간난간대의 공간폭은 50cm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난간대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